



의료보험GUIDE (XVIII)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기관의 통보의무

요양기관의 소재지등의 변경사항이 있을시는 협회나 의료보험연합회 관리부 관리 1과로 즉시 신고하여 주셔서 의료보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의 통보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양기관은 다음에 해당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서식”에 다음 각호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요양기관 변경사항 신고서”를 보험자단체 및 공·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지정서 반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요양기관의 명칭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사본
- 2) 요양기관의 소재지
 - 폐업사실 확인서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사본
- 3) 요양기관의 대표자
 - 2)와 동일(법인의 경우에 한함)
- 4)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주요의료장비
 - 주요 의료장비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요양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거정번호	전화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19	(인)
신고인	
의료보험연합회장 귀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관계증명서류 1부.	

(190mm×268mm신용지50g/㎡)

- 검사시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고용의 경우 자격증 사본첨부)

- 5)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병상수 및 병실수
- 6) 요양기관의 휴업 및 재개업
- 7)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
· 대표자 인감 증명서

㉔ 근관확대의 산정범위는?

㉔ 유치에서의 근관확대료는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구치에서 근관확대는 여러날에 걸쳐 여러회 실시했다하더라도 1치아당 2회이내 산정할 수 있다.

㉕ 문치공 전달마취의 산정범위를 알려주세요.

㉕ 상악전치발치(수술)나 치주수술시에 산정할 수 있으나 보존치료시에는 불인정하고 있음.

㉖ 상·하악 우측지치를 동시 발치하기 위하여 전달마취를 시행하였을 경우 전달마취료가 2회 산정 가능한지?

㉖ 치과 전달마취는 동시에 2개소를 실시하여도 각 악당 주된 블록간 1회 산정가능하며 상·하악을 동시에 마취한 경우는 2회 산정이 가능함 그러나 동일악에서는 1회만 인정한다.

㉗ 골드 크라운이나 인레이가 탈락되어 다시부착해야 할 경우 산정방법은?

㉗ 골드크라운일 경우에는 비급여이고 인레이 일

경우에는 보통치치로 인정한다.

㉘ 외제 리도카인 사용시 청구방법은?

㉘ 수입의약품 등제항목으로서 함량·효능등이 같을 경우 국산리도카인 최저가로 인정하고, 함량·효능등이 다를 경우 실구입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㉙ 보건사회부 고시 제90-10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㉙ 상병과 관련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작성시 수술란에 “○”표기를 하도록 고시되어 있으나 홍보등의 충분한 기간(수술란 표기서식 '89. 7. 1부터 고시)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동 표기를 제대로 기재치 아니하여,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병명으로 진료비등을 비교 분석하는 경우 수술을 하는 기관이 비 수술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분석될 수 있는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표기를 누락시키는 요양기관의 명세서는 명세서 기재사항누락으로 반송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상병과 관련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작성시 반드시 수술란에 “○”표를 기재하여 청구토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알 림 ◆

'90년에 발행된 새로운 회원명부에 게재된(P.86, 좌측하단) 치과교정연구회 회장 및 서울치대 15회 동창회 회장인 김일봉박사의 병원 전화번호가 잘못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誤	正
776-1387	776-1787